제351회 임시회
2016. 10. 7.(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김영주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9월 27일

○ 회부일자 : 2016년 9월 28일

3. 개정이유

○ 충북의 자살예방 사업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확대 개선을 통해 실질적 민·관 거버넌스의 강화를 도모하고,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 및 약칭표기 개정 (안 제2조, 제3조, 제4조)

- (현행) 주민 → (개정) 도민

- 제1조 목적조문에 사용된 약칭을 제2조로 옮김

나. 교육감의 책무 및 홍보 · 교육 활동 조항 삭제

- (현행) 제5조, 제10조제4항

다. 위원회 구성 확대 (안 제6조)

- 위원수 : (현행) 10명 이내 → (개정) 15명 이내
- 위원장 : (현행) 충청북도 3급 이상 공무원 → (개정) 행정부지사
-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확대 (추가)
  - 당연직 : 여성정책관
  - 위촉직 : 충북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 추천 각 1명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출 배경

○ 본 조례안은 충북의 자살예방 사업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확대 개선을 통해 실질적 민·관 거버넌스의 강화를 도모하고,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목적)에 약칭 표기를 사용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약칭표기를 제2조로 변경하고,

○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는 ‘주민’을 도 조례에 부합한 ‘도민’으로 변경하였으며,

○ 현행 제5조 및 제10조제4항의 교육감의 책무 및 역할 규정을 삭제하였음.

- 이와 관련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시행령」제7조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대해 실시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해당 교육청과의 협의를 전제로 교육감의 책무 등을 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 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별도의 행정시스템과 관련 자치법령을 두고 있는 바, 도 조례로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은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됨.
- 따라서, 현행 제5조 및 제10조제4항의 삭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6조는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격상시키고,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 현행 ‘10명 이내’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늘리고,
- 위원장을 현행 ‘충청북도 3급 이상 공무원’에서 ‘행정부지사’

로 격상하며,

- 당연직 위원으로 ‘여성 정책관’을 추가하고, 위촉직으로 ‘충북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 추천 각 1명’과 ‘충청북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였음.
- 이는 충북의 자살문제가 심각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7조 제2항의 경우, 현행 조항이 인용한 ‘정신보건법 제13조의2’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의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규정한 것으로, 도 센터 설치와 부합하지 않는 바, 이를 ‘「정신보건법」 제13조’로 변경한 것은 적절함.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 종합 의견

○ 자살문제와 관련해 충북은 2013년 이후 전국 17개 광역·자치 시·도 중 세 번째 이내의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바,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강화 측면에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법률적으로도 타당함.

붙임

자살예방 관련 참고 자료

① 자살 사망자 수 및 자살률

*자살률 :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수

	2012년		2013년		2014년	
	사망자수	자살률	사망자수	자살률	사망자수	자살률
전국 계	14,160	28.1	14,427	28.5	13,836	27.3
서울	2,391	23.8	2,560	25.6	2,467	24.7
부산	1,050	30	1,013	29	1,000	28.7
대구	601	24.2	666	26.8	624	25.2
인천	872	31.2	868	30.6	834	29.1
광주	370	25.4	331	22.6	349	23.8
대전	382	25.3	363	23.9	408	26.8
울산	263	23.2	284	24.8	293	25.4
세종	43	41.6	23	19.7	25	18.1
경기	3,215	27	3,369	27.9	3,139	25.7
강원	583	38.3	587	38.5	563	**36.8 (1위)**
충북	567	**36.6**	543	**34.8**	**493**	**31.5 (3위)**
충남	746	37.2	757	37.4	746	**36.5 (2위)**
전북	544	29.2	553	29.7	535	28.8
전남	595	31.3	583	30.8	556	29.4
경북	871	32.5	833	31.1	762	28.4
경남	886	26.9	902	27.3	880	26.5
제주	181	31.5	192	32.9	162	27.2

* 자료출처 : 통계청